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3.24.] [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, 2013.3.24., 타법개정]

미래창조과학부 (과학기술정책과) 02 - 2110 - 2523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4.14.>

제2조(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)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4.14., 2008.3.4., 2013.3.24.>

제3조(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) ①「과학기술기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(이하 "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4.14., 2008.3.4., 2013.3.24.>

1.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
2.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
3.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

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,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
제4조 삭제 <2008.3.4.>

제5조 삭제 <2006.12.29.>

제6조 삭제 <2006.4.14.>

제7조(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)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,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. 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
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,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
[전문개정 2006.4.14.]

제8조(과학연구단지의 지정)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4.14., 2008.3.4., 2013.3.24.>
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(이 경우 "산업단지"를 "과학연구단지"로 본다)

2.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
3.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
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
제9조(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) 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1.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
2.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3.4., 2013.3.24.>
1.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, 대표자 및 주소
2.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,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
3.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
4.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

부칙 <제1호,2013.3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7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,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한국과학재단"을 각각 "한국연구재단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미래창조과학부장관"으로 한다.

②부터 <31>까지 생략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13.3.24>

<table>
<tr><td colspan="5">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</td><td>처리기간
15 일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과학기술인의 인적사항</td><td>성 명</td><td></td><td>주민등록 번 호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소속기관 및 부서명</td><td></td><td>직 위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전 공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해당과학기술인의 서명 또는 날인</td><td colspan="4">(인)</td></tr>
<tr><td>교류의필요성 및 목적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교류의기간</td><td colspan="5">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</td></tr>
<tr><td>교류대상기관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교류과학기술인의 활용계획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>교류에 따른 기대효과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기술인 교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연구기관명) (인)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※ 구비서류 : 관련연구사업계획서 3부</td></tr>
</table>

210mm×297mm
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3.3.24> (앞 쪽)

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		처리기간 30일
신 청 인	①지방자치단체의장	
	②담 당 과	
	③주 소	
지 정 신 청 대 상 지 역	④지정목적 및 필요성	
	⑤위 치	
	⑥면 적	
⑦개 발 기 간		
⑧개 발 방 법		
⑨주요 유치 연구기관 및 시설의 종류		

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

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

※ 구비서류 : 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
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뒤 쪽)

※ 구비서류

1.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("산업단지"를 "과학연구단지"로 본다)
2.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
3. 도로·용수·전기·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 (지방자치단체의 장)	처 리 기 관 (미래창조과학부장관)
신 청 →	접 수
	↓
← 검 토 결 과 통 보	검 토 (의 견 서 첨 부)
	↓
	지정승인(미래창조과학부장관)